

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6. 3.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비하고, 동 규정에 따라 이미 적용되는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수정(안 별표 5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준용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

나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

-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중복되는 조문이 있어 복무규정 개정 시 조례 개정이 연속적으로 필요하여,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도록 함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정비하고,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- 특히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중복되는 복무·휴가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, 향후 상위 복무규정 개정 시 조례 개정이 연속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